

- 2018년도 -  
**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 중  
 감사담당관 소관 검토보고서**

**1. 안건명**

-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(안)  
 - 감사담당관 소관

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- 2017년 11월 20일(월), 마포구청장

**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**

- 2017년 11월 20일(월)

**4. 관련법규**

- 『지방자치법』 (2017. 7. 26. 법률 제14839호) 제127조
- 『지방재정법』 (2017. 10. 24. 법률 제14919호) 제36조

**5. 2018년도 마포구 세출예산안 총괄**

(단위: 천원)

구분	2018년	2017년	비교증감	증감률
<b>총계</b>	<b>573,540,327</b>	<b>530,655,142</b>	<b>42,885,185</b>	<b>8.08%</b>
일반회계	503,182,714	460,538,767	42,643,947	9.26%
특별회계	70,357,613	70,116,375	7,755,422	0.34%
의료급여기금	394,520	372,288	22,232	5.97%
마포농수산물시장	7,257,949	6,732,079	525,870	7.81%
주차장	58,820,349	55,567,736	3,252,613	5.85%
발전소주변지역사업	3,299,176	7,056,268	△3,757,092	△53.24%
관광사업	585,619	388,004	197,615	50.93%



## 6.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(안)

### 가. 총괄

(단위: 천원)

구분	2018년도 예산액	2017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총계	228,222	222,046	6,176	2.78%

### 나. 일반회계 세부사업 예산안

(단위: 천원)

정책·단위(회계)·세부사업·편성목	2018년도 예산액	2017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총계	228,222	222,046	6,176	2.78%
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	85,736	85,320	416	0.49%
깨끗한 공직사회 조성	38,909	38,533	376	0.98%
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	46,827	46,787	40	0.09%
행정운영경비(감사담당관)	142,486	136,726	5,760	4.21%
기본경비(감사담당관)	142,486	136,726	5,760	4.21%

## 7. 검토보고

### <총괄 예산 규모>

-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2,82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,204만 6천원 대비 2.78%에 해당하는 61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,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,031억 8,271만 4천원의 0.04%에 해당하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

### <사업별 주요 편성내용>

-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 세출예산액은 8,57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8,532만원 대비 0.49%에 해당하는 4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함



-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액은 1억 4,248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,672만 6천원 대비 4.21%에 해당하는 576만이 증액 편성되었음
- 주요증액내용은 청렴퀴즈운영 시상금 50만원,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 보수비 50만원, 특근매식비 단가 상향에 따른 증가분 5백 76만원이 편성됨
- 주요 감액내용은 공직자재산조회 비용 49만 2천원과 청렴한 세상 참여엽서 제작비용 30만원이 감액 편성됨
- 검토의견으로는  
 마포구는 2017년 서울시 「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」 “최우수 구” 로 선정되는 등 동네 순찰을 통해 지역의 생활불편 사항과 안전위해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고자 동별 5~6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‘현장민원살피미’ 운영 등 주민불편 해소민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
-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 민원처리 건수는 총 14,015 건이며 고충민원 372건, 상담민원 13,026건, 구청장에 바란다. 617건으로 모든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,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민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특히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
- 감사담당관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예산과 관련하여 매년 특별한 변화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